

신구문대비표

현행	수정
제6조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와 입회비 그리고 회비를 납부하고,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제6조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와 입회비 그리고 회비를 납부하고,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7조 본 학회의 회원으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	삭제
제9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회 장 1명 부 회 장 약간 명 (...하략...)	제8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회 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 회 장 약간 명 (...하략...)
제10조 본 학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으며, 이사들의 사무분담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	제9조 본 학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평의원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.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으며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11조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, 통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연구이사 중 1인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	제10조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, 통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연구이사 중 1인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제13조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, 임원회, 편집위원회 등이 있다. ① 총회는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② 임원회는 회장이,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	제12조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, 임원회, 편집위원회 등이 있다. ①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② 임원회는 회장이,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제14조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.	제13조 본 학회의 회의 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.
제19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로 한다.	제18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9월부터 익년 8월 까지로 한다.
제25조 이 회칙은 1977년 7월 2일에 제정 시행하여, 1994년 9월 9일, 1996년 12월 20일, 1997년 12월 5일, 1999년 7월 5일, 2002년 1월 1일, 2002년 7월 1일, 2005년 7월 1일, 2006년 12월 9일 등 8회에 걸쳐 개정하였고, 2006년 12월 9일에 개정된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제24조 이 회칙은 1977년 7월 2일에 제정 시행하여, 1994년 9월 9일, 1996년 12월 20일, 1997년 12월 5일, 1999년 7월 5일, 2002년 1월 1일, 2002년 7월 1일, 2005년 7월 1일, 2006년 12월 9일 등 8회에 걸쳐 개정하였고, 2006년 12월 9일에 개정된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016년 6월 25일에 개정된 회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